

3. 의견제출

이 「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」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4월 1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(<http://opinion.lawmaking.go.kr>)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,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[주소:(30113)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(정부세종청사 10동), 참조 : 보건의료정책과장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(반대 시 이유 명시)

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기관·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그 밖의 참고 사항 등

4. 그 밖의 사항

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(전화: 044-202-2411, 팩스: 044-202-39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●고용노동부공고제2020-109호

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
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0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3조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명칭, 유해성·위험성, 연간 제조·수입량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3월 6일

고용노동부장관

※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<http://www.moel.go.kr> 뉴스·소식 → 공지사항)에 게재하였습니다.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278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㈜한국도시녹화 ② 대건케미칼(주)

③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

나. 전화번호 : ① 02-414-1163 ② 031-798-8333 ③ 02-2008-9114

2. 명칭 : 버팀애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과 유도가열 부착 일체형 경량 유닛박스 시스템을 이용한 인공지반 녹화기술

3. 내용요약

<분야>

건축 / 조경 / 옥상녹화, 건축 / 조경 / 기타 조경

<기술의 요지>

본 신청기술은 버팀에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을 사용하여 친환경성이 우수하며, 전자기 유도가열 방식의 고정구 및 융착장치를 이용한 기술로서, 콘크리트 인공지반 구조체 위에 엔지니어링 PE시트, 사전 식재된 EPP 충전 격막 탈착형 경량 유닛박스를 현장에서 단순 고정과 일체화시켜 내풍압성, 시공성 향상은 물론 유닛박스 설치 후 격막제거가 가능하여 연속 녹지 및 열차단성을 개선한 인공지반 녹화기술임.

<범위>

콘크리트 인공지반 구조체 상단에 방수, 방근을 위한 엔지니어링 PE시트를 금속 원형 고정구로 유도가열 장치로 융착하고, 그 상단에 유닛박스 고정을 위한 콘형상 고정구를 유도가열 장치로 융착한 후 사전에 버팀에시 재활용 인공경량토양 포설 및 식재가 된 EPP 충전 격막 탈착형 경량 유닛박스를 콘형상 고정구에 삽입 고정하여 수직 일체화를 이루고 격막을 제거하여 연속된 녹지를 형성하는 인공지반 녹화기술

4. 기타 신청 기술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센터 (전화: 031-389-6454)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※ 이해관계인 의견 제출 내용

가.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

나.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

- 1)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·도용한 경우
- 2)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
- 3)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

다. '나'의 내용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

●국토교통부공고제2020-279호

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지정 신청이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고하니, 동 건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아래 신기술지정 신청기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 의견서를 공고일로부터 30일내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년 3월 6일

국토교통부장관

신기술 지정 신청

1. 기술개발자

가. 성명 또는 법인명(대표자 성명) : ① (주)월드와이즈월 ② 한국세라믹기술원

나. 전화번호 : ① 031-221-3000 ② 055-792-2462